

## 2017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농림축산식품부	재해보험정책과	과장 문석호 사무관 오재협	044-201-1791 044-201-1728

### I. 사업개요

#### 1. 목적

-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

#### 2. 근거법령

-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, 제8조, 제19조, 제20조 및 제25조의2

#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로 확대하고 가입면적 30만ha 수준으로 제고

성과지표	2017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'14	'15	'16		
▪ 재해보험 가입면적 (주지표)	300천ha	134	186	297	매년말	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면적 (사업시행자 최종 산출 보고)
▪ 가입품목 증가수 (부지표)	3품목	3품목	3품목	4품목	매년말	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수

#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합계	277,751	383,723	382,849	383,081	383,477
보조	159,396	217,233	215,862	215,978	216,176
자부담	118,355	166,490	166,987	167,103	167,301

\*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

#### 5.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

- 사업시행기관 : 재해보험사업자(NH농협손해보험)
- 사업관리기관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### II.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# 1. 사업대상자
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(이하 “재해보험가입자”)

#### 2. 가입자격 및 요건

##### 가. 가입자격

- 과수, 벼·맥류, 밭작물 :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불입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
- 농업용 시설물·시설작물, 버섯재배사·버섯작물 : 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불입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

##### 나. 세부 사업내용

##### (1) 보험대상 농작물

- 본사업(전국 판매 39개품목) : 사과·배(적과전종합위험 포함)·단감·감귤·뽕은감·참다래\*·자두·밤·콩·감자·양파·고구마·옥수수·미늘·매실·대추·고추·포도·벼·인삼·느타리버섯·표고버섯·시설작물(수박·딸기·오이·토마토·참외·풋고추·호박·국화·장미·멜론·파프리카·부추·시금치·상추·가지·배추·파)

\* 참다래는 부산, 울산, 광주, 전남, 경남, 제주 대상

- 시범사업

구분	5년차 이상	4년차	3년차	2년차	1년차
작물명	복숭아(전국 판매) 복분자·오디·차	단감(적과전종합위험)	시설무, 시설백합, 시설카네이션· 사과(적과전종합위험)	시설마니리·밀· 양배추·오미자· 뽕은감(적과전종합위험)	무화과·유자· 시설쭈갓
작물수	4	1	4	5	3

\*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.

\*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·특정재배방법·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.

**(2) 보험사업 실시지역**

- 본사업 품목 : 전국(단, 참다래는 부산, 울산, 광주, 전남, 경남, 제주)
- 시범사업 품목 : 전국 또는 품목별 주산지
- 보험사업 실시지역 : 붙임1
  - \* '17년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15일전까지 확정 통보

**(3)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**

구분	대상 품목	대상 재해	비고
특정위험보장	사과·배·단감·뽕은감	(주계약) 태풍(강풍)·우박·지진피해 (특약) 봄동상해·가을동상해·집중호우·나무보상	
	인삼 및 해가림시설	(주계약) 태풍(강풍)·폭설·집중호우·침수·화재	
적과전종합위험	사과·배·단감·뽕은감	(적과전)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적과후) 태풍(강풍)·우박·집중호우	
종합위험보장	밤·대추·참다래·매실·자두·복숭아·포도·오디·오미자·고추·마늘·양파·고구마·콩·옥수수·차·감자·양배추·밀·농업시설·시설작물·버섯재배사·버섯작물	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	단, 감자는 병충해 보장
	벼	(주계약)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특약) 병충해 4종(흰잎마름병, 줄무늬잎마름병, 벼멸구, 도열병)	
	감귤	(11.30일 이전)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12.1일 이후) 동해	
	복분자	(5.31일 이전)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6.1일 이후) 태풍(강풍)·우박	

**(4) 보험 판매기간 : 붙임1**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

**(5) 보장유형 : 붙임2**

**(6) 보험가입단위**

- 농작물 :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
- 농업용 시설물·시설작물, 버섯재배사·버섯작물 :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
-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
  - 다만, 옥수수·콩은 농지 당 1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, 마늘은 농지당 20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300만원 미만인 농지, 벼·밀은 농지당 50만원 미만이고 증권 당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.
  - 차(茶)·버섯작물·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붙임1의 경작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
  - \*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, 단지는 도로, 둑,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.
  - \* 다만,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리·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
  - \*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가 인접한 농지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 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
  - \*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가 인접한 단지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인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

**(7) 재해보험 가입절차(붙임3 참조)**

- 보험가입안내(지역 대리점 등) → 가입신청(재해보험가입자) → 현지확인(농지원장 작성 등) →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) → 보험증권 발급
-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

**(8) 보험료 납입방법**

-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(1회납)을 원칙으로 하며,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
-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납부 가능

- 현금 납부 시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함
  - 다만,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
- 보험료 현금분납방법

구 분	납입시기	납 입 액
1회	보험가입시	농가부담 보험료의 70%
2회	5월 31일 이전	농가부담 보험료의 30%

**(9)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·할증**

- 보험요율 적용 : 주계약별, 특약별로 각각 광역시·도 또는 시·군별 요율 적용
  - 농업용 시설물·시설작물, 버섯재배사·버섯작물은 시·군·구별 요율 적용
- 보험료 할인·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, 품목별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함
  - 보험료 할인·할증 종류
    -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·할증
    - 방재시설별, 대상 재해별 할인
    -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·할증
    -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·할증 등

**(10) 보험기간 적용**

- 품목별로 따로 정함(보험약관에 따름)

**(11) 보험가입금액 산출**

- 시설작물·노지고추·인삼·버섯작물을 제외한 농작물 품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농지별로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(표준가격)을 곱하여 산출
  - 재해보험가입자는 평년착과량(또는 평년수확량)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그 범위는 평년착과량(또는 평년수확량)의 50~100%임. 단, 매실 백가하 품종 비중 80% 초과 농지는 평년수확량의 50~80%임.
  - 특정위험방식 및 적과전종합위험 방식 재해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 평년착과량의 100%~130% 범위 내에서 가입수확량을 결정할 수 있음
  -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산정의 기초자료인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을 고지하여야 함

-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으로 재해보험 가입자가 결정
  -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의 적정보험가입금액 가입을 위해 고지사항을 기초로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보장생산비를 안내
- 농업용시설물 및 버섯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단위로 설정하며,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가액의 90%~130%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결정
  - 보험가액이 전산으로 산정되지 않는 유리온실, 버섯재배사,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및 부대시설의 경우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
- 노지고추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(생산비)의 50%~100%(10%단위)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함
-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단위면적당 보험가액의 50%~100%(10%단위) 범위 내에서 결정
-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50%~100%(10%단위) 범위 내에서 결정

**(12) 손해평가**
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」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

**(13) 보험금 지급시기**

-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.
  - 다만, 이양·직파불능보험금, 재이양(재과종, 재정식)보험금, 경작불능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
- 노지고추·시설작물·인삼(해가림시설 포함)·버섯작물·버섯재배사 및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

-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%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

#### (14) 재보험(붙임4 참조)
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
-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음
-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, 출재금액, 출재비율, 재보험요금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여야 함

### 3. 지원대상

- 순보험료 : 50% 보조 단, 아래 품목(5개)은 보장수준별로 40~ 60% 차등 보조
  - \* '17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 한해 보험료 국고 지원 (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.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붙임5 참조)

구 분	품 목	보장수준 (%)				
		60	70	80	85	90
국고 보조율 (%)	벼	60	55	50	50	50
	배(적과전종합)	-	60	50	40	-
	단감(적과전종합)	-	60	50	40	-
	사과(적과전종합)	-	60	50	40	-
	뽕은감(적과전종합)	-	60	50	40	-

\* 보장형 별 벼는 5개 유형, 배·단감·사과·뽕은감(적과 전 종합위험) 3개 유형 판매

-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 : 100% 보조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순보험료 :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
  -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
- 운영비(부가보험료) :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(일반관리비, 영업비, 사업자 수수료, 품목개발비 등)

### 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순보험료 :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,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- 운영비 :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
### 6. 보험상품 연구·개선
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작물 및 재해피해의 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관련 보험제도, 신규 도입상품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연구를 추진
  - 품목별 보험판매시기를 감안하여 “상품개선협의회”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상품연구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며, 연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

### 7. 개발 및 판매
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 개발을 추진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시행하고, 객관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.
-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대리점(농·축협) 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

### 8. 기타

-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, 「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」,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」, 「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농작물재해보험 약관」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
- 보험요금 적용, 보험료 할인·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, 보험 판매기간,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
-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

### 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#### 1. 사업신청단계

#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세부사업 기본계획(사업대상, 지원조건, 보조율, 사업기간 등)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전달

#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,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 협의회 운영,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
-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(법 제8조), 재보험사업약정체결(법 제20조) 실시

##### 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 기초서류(사업방법서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, 요율검증보고서), 상품별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·축협(이하 “대리점”) 등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

#### 2.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

#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, 상품개선협의회 운영, 대농업인·지자체·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상품 및 제도개선을 위해 “상품개선협의회”를 개최
  - 개최시기 : 분기별 1회 이상(단, 필요시는 수시 개최)
  - 주요내용 : 현장의견·자체검토사항,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업무협의
  - 참석범위 : 농림축산식품부, 농업정책보험금융원, 재해보험사업자, 보험개발원 등

##### 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

-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
- 농업인·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
-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·홍보 실시
- 사업실시 중 보험상품·보험요율·보험약관 변경 사항,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생시에는 상품개선협의회를 통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여야 함

#### 3. 자금배정단계

#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,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금배정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

#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,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
-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##### 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 운영비 사용계획서(집행계획) 수립
  - 지출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
- 자금배정 신청
  -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
- 자금집행
  -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
- 정산
  -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

#### 4. 이행점검단계

##### 〈사후관리〉

###### 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
  -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

##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,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
-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(농업인)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
  - 점검대상 : 재해보험사업자,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, 보험가입자
  - 점검일정 : 반기별 1회 이상(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)
- 점검항목
  -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: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,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등
  - 사업실적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

##### 〈제재〉

###### 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
  -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
  -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
  -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
  -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

######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재해보험사업자,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·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###### 농림축산식품부

- 부당·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,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

#### 5. 성과측정단계

##### 〈성과지표 측정〉

-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,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
  - 주요 성과지표 : 가입면적, 가입농가 수, 대상품목 증가 수(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름)
  - 성과지표 측정(매년) :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,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

##### 〈만족도 조사〉

-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·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
  - 조사시기 : 사업기간 중
  - 조사대상 : 농업인
  - 조사방법 : 전화,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
  - 주 관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(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)

#### 6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##### 〈사업평가〉

###### 가. 원 칙

-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, 보조금 집행실적, 농업인 민원·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

**나. 사업평가 요령**

- 평가주관 및 기간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, 매년 1월
- 평가대상 : 재해보험사업자
- 평가기준 :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, 보험가입률,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, 보조금 집행 현황, 민원 발생현황 등

**다. 사업평가 실시 절차**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·시행 (3월중)
-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·분석하여 품목별·지역별 가입현황, 보조금 집행현황(매년 12월말 기준),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(익년 1월 15일까지)

**라. 평가 후 사후관리**
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
**《환류》**

-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

<붙임 1>

**사업지역 및 가입단위**

구분	사업지역	경작면적(m <sup>2</sup> ) 이상	판매기간	
본사업	사과·배·단감·뽕은감	전국	1,000	2월~4월 (단, 봄동상해 특약은 3.24까지)
	밤	전국	10,000	4월
	대추	전국	1,000	4월
	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(수박·딸기·오이·토마토·참외·꽃고추·호박·국화·장미·파프리카·멜론·상추·부추·시금치·배추·가지·패)	전국	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	2월~11월
	고추	전국	1,500	4월~5월
	고구마	전국	2,000	5월
	옥수수	전국	3,000	5월~6월
	감자	전국 (단, 봄감자는 강원 평창)	1,500	봄감자 (5월~6월) 가을감자 (7월~9월)
	참다래	부산·광주·울산·전남·경남·제주(6개 시·도)	1,000	6월~7월
	콩	전국	4,500	6월~7월
	마늘	전국	1,500	(난지형) 10월~11월 (한지형) 11월
	양파	전국	1,500	11월
	자두	전국	1,000	11월
	매실	전국	1,000	11월
	포도	전국	1,000	11월
	벼	전국	4,000	4월~6월
	인삼	전국	1,000	11월
	버섯재배사 버섯작물 (표고·느타리)	전국	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	4월~11월 (표고 원목재배는 6~8월)
	배(적과전 중합위험)	전국	1,000	11월

구분	사업지역	경작면적(m <sup>2</sup> ) 이상	판매기간	
시범사업	시설작물 (무·백합·키예이전·미나리)	전국	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	2월~11월
	차	(전남) 보성 (경남) 하동	1,000	10월~11월
	오디	(전북) 부안, (전남) 영광	1,000	11월
	복분자	(전북) 고창·정읍·순창 (전남) 함평·담양	1,000	11월
	복숭아	전국	1,000	11월
	양배추	(제주) 제주·서귀포	2,000	7월~8월
	밀	(전북)익산 (전남)해남 (경남)사천	4,000	10월~11월
	오미자	(경북)문경·상주		11월
	단감(적과전 종합위험)	전국	1,000	11월
	사과(적과전 종합위험)	[30개 시·군·구] (경북)안동·문경·포항·청송·영주·의성·봉화·예천·상주·영천·군위·영덕·영양·김천·성주·청도·경주 (경남)거창·밀양·함양 (전북)장수·무주·정읍 (전남)장성 (충북)충주·보은·제천·괴산 (충남)예산·당진	1,000	11월
	뽕은감(적과전 종합위험)	[30개 시·군·구] (전남)영암·광양·나주·구례·순천·장성·영광·함평·무안·장흥·곡성·보성·강진 (전북)완주·고창·정읍 (경남)하동·산청·진주·의령·사천·장원·합천·함양 (경북)상주·청도·문경 (충남)논산 (충북)영동 (제주) 제주	1,000	11월
	시설축갓	전국	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	10월~11월
	감귤(종합)	전국	1,000	4월
	무화과	미정	미정	11월
	유자	미정	미정	11월

- ※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아님.
- ※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,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(일선농협)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
- ※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
- ※ 밀줄 친 품목 및 사업지역은 '17년 신규 도입 및 신규판매 지역임

<붙임 2>

보장방식별 품목별 보장유형

구분	보장방식	품목	보장수준(보험가입금액의 %)				
			60	70	80	85	90
과수작물	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	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	-	○	○	○	-
	일소피해 보장	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	-	-	-	-	○
	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	밤, 대추, 참다래, 매실, 자두, 복숭아, 포도	○	○	○	○	○
		오미자	○	○	○	-	-
	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	오디, 감귤	○	○	○	○	○
	적과전 종합위험방식	배, 단감, 사과, 뽕은감	-	○	○	○	-
	수확전 종합위험방식	복분자	○	○	○	-	-
밭작물	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	고구마, 옥수수, 봄 감자, 콩, 가을감자, 마늘, 차, 양파	○	○	○	○	○
		양배추	○	○	○	-	-
	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	인삼	○	○	○	○	○
		해가림시설	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% 해당금액으로 적용				
	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	고추	보험가입금액(생산비)의 100% 보장형(다만, 손해액이 잔존보험가입금액의 5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 보상)				
벼·맥류	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	벼	○	○	○	○	○
		밀	○	○	○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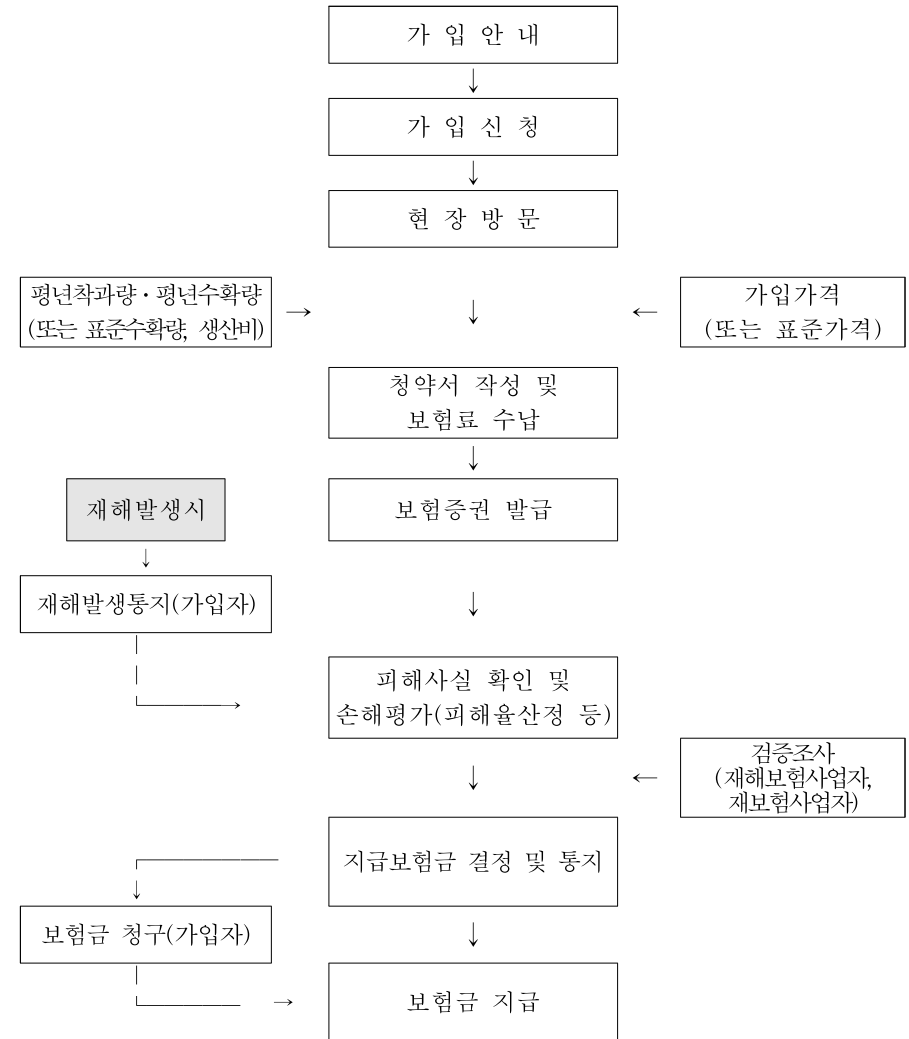


구분	보장방식	품목	보장수준(보험가입금액의 %)				
			60	70	80	85	90
시설작물	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	시설작물(수박, 딸기, 오이, 토마토, 참외, 풋고추, 호박, 국화, 장미, 파프리카, 멜론, 부추, 시금치, 상추, 배추, 가지, 파, 무, 백합, 카네이션, 미나리)	보험가입금액(생산비)의 100% 보장형(다만,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보상)				
버섯작물	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	느타리버섯, 표고버섯	보험가입금액(생산비)의 100% 보장형				
		버섯재배사	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(단,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한도) 내에서 손해액의 10%를 적용하고,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)				
농업용 시설물	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손해보장	단동하우스, 연동하우스, 유리온실, 부대시설	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(단,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한도) 내에서 손해액의 10%를 적용하고,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)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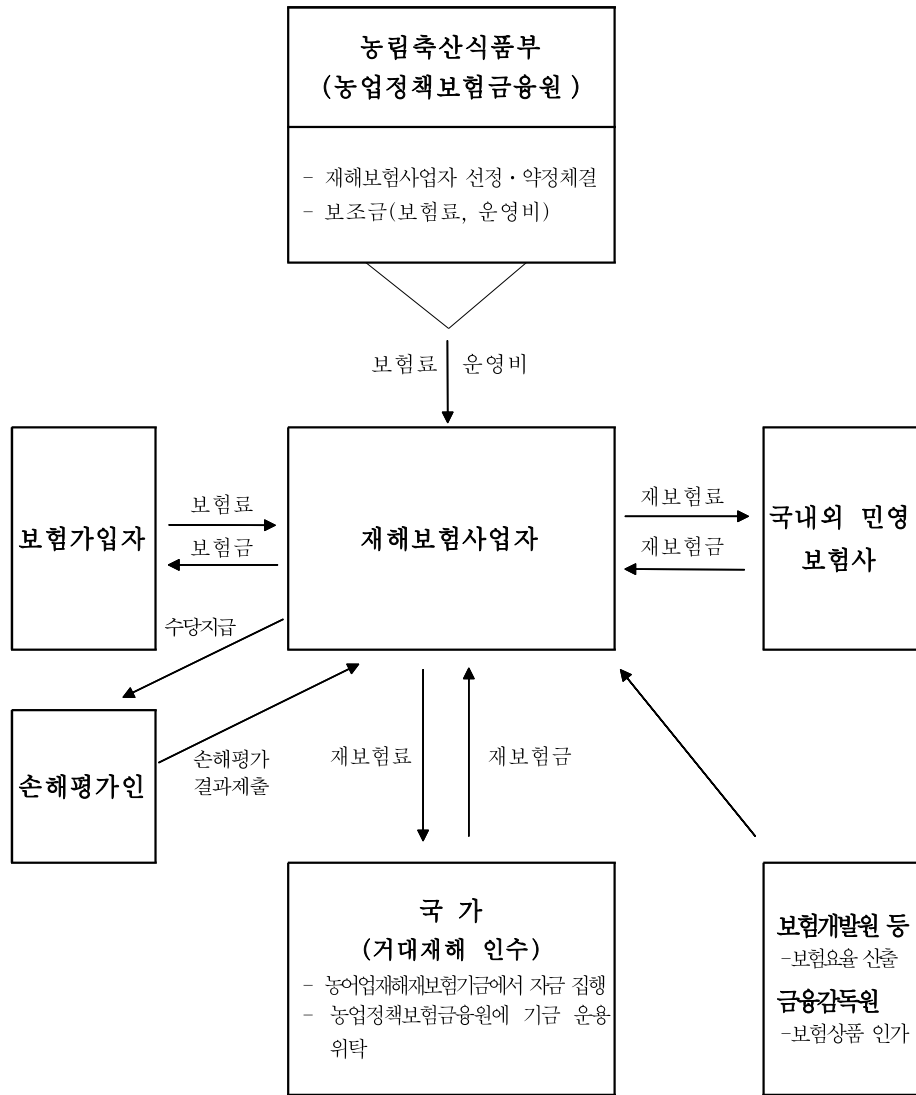
※ (자기부담금)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%, 30%, 20%, 15%, 10%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,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.

<붙임 3>

###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



**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**



**농업경영체 등록 대상, 절차 및 방법**

○ 등록대상(신규)

- 대상 경영체 : 미 등록 경영체,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
  - \* 농·축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하는 농업법인도 등록 가능
- 대상 품목 : 경영체가 생산하는 전체 농림축산물
  - \*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한 품목으로 세부적인 품목은 농수축산물 품목 표준코드 중분류 기준으로 등록
- 농지범위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
  - \* 불법(무단)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
- 대상정보 : 인적정보, 농지·농작물 생산정보 등 93개 항목

- 등록절차 및 방법 : (1) 신청서 작성 → (2) 신청서 제출 → (3) 접수 및 전산등록 → (4) 등록확인서 발급

순서	등록절차	등록 방법
1	신청서 작성	• 「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」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*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naqs.go.kr">www.naqs.go.kr</a> )에서 출력 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
2	신청서 제출	• 경영주가 「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」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팩스, 메일(서명란 스캔 첨부)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*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(신원 확인) 가능
3	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	• 신청서 접수 및 농업경영정보 확인 후 경영체 고유 등록번호 부여하고 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
4	등록확인서 발급	•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

\*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( 1644-8778 )로 문의